

##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향토유적의 발굴과 보존·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실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형성시기에 관계없이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향토유적의 정의를 보완하고, 문화재 지정 관련 법규에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추가함(안 제2조).
-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전문가로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
- 1945년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형성시기에 대한 조건과 제2조(정의)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 시 법적근거가 없는 도지사 승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삭제).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년 2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을 “이”로, “다음 각호”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로, “역사, 예술상”을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설치)”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향토유적의 관리·보존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로 그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4.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심의사항)”을“(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은”을 “위원회는”으로, “호와 같다”를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향토유적의”를 “향토유적의 수리·복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향토유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6(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자지정) 시장은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없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호 중 “설치한다(별지 제3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u></p> <p>제2조(정의) <u>본</u>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u>다음 각호에</u>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u>문화재보호법의</u>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u>역사, 예술상</u>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p> <p>2. 3. (생략)</p> <p>제3조(위원회설치) ① <u>이 조례의</u>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오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u>위원회</u>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u></p> <p>제2조(정의) <u>이</u> ----- ----- <u>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u> 형성된 것으로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u>--.</p> <p>1. 「<u>문화재보호법</u>」 및 「<u>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u>」에 따라 ----- <u>역사적·예술적·학술적</u>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향토유적의</u> 관리·보존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4조 <u>각 호의 사항</u>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lt;삭 제&gt;</u></p> <p>③ <u>위원회</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u>위원</u>으로 구성한다.</p>

<신 설>

<신 설>

④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로 그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4.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신 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적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5.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향토유적의 수리·복원 등 -----
5. 그 밖에 향토유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신 설>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신 설>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10조(관리자지정) ① 향토유적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

제4조의6(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0조(관리자지정) 시장은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하

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별지 제3호서식)
3. ~ 5. (생략)

제13조(경비보조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되, 소유자가 없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  
-----  
-----.

1. (현행과 같음)
2. -----  
-----  
-----  
-----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비보조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서 삭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